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10.

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접수일자 : 2008년 10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1. 6)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08. 7. 3. 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규정 및 등 규정시행규칙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에 공무원 총 정원을 표시하고자 함.
- 정원조정 내역

- 총 정원 : 1,274명으로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여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정원책정 기준】 - 신설

()안은 조정전 비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기준비율	78%이상 (78)	20%이내 (20)	2%이내 (2)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신설

1. 총정원 : 1,274명 (정무직1,일반직981,기능직279,별정직13)

- 일반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19)	32%이내 (29)	27%이내 (31)	12%이상 (13)

- 기능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기준비율	4%이내 (3)	12%이내 (6)	50%이내 (14)	30%이내 (32)	4%이상 (45)

- 별정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기준비율	0%이내 (7)	38%이내 (19)	38%이내 (48)	24%이상 (24)	0%이내 (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우리구 행정조직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5 호
----------	---------

제출연월일 : 2008.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2008.7.3 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에 공무원 총 정원을 표시하고자 함.

□ 정원조정 내역

- 총 정원 : 1,274명으로 정원채정 기준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신설하여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정원채정 기준] - 신설

()안은 조정전 비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기준비율	78%이상 (78)	20%이내 (20)	2%이내 (2)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신설

1. 총정원 : 1,274명 (정무직1,일반직981,기능직279,별정직13)

- 일반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19)	32%이내 (29)	27%이내 (31)	12%이상 (13)

- 기능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기준비율	4%이내 (3)	12%이내 (6)	50%이내 (14)	30%이내 (32)	4%이상 (45)

- 별정직

()안은 조정전 비율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기준비율	0%이내 (7)	38%이내 (19)	38%이내 (48)	24%이상 (24)	0%이내 (2)

3. 참 고 사 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8.7.3 대통령령 제20900호)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5 :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참고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08. 10. 9 ~ 10. 19) 결과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결과 요약(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영등포구지부</p>	<p>○일반직 6급 정원 22%이상 책정</p> <p>○기능직 6급 비율을 5%,7급 비율을 15%이상 책정하되 점차적으로 일반직과 같게 조정</p> <p>○세무직, 사회복지직도 직원구성에 맞게 6급 비율 조정</p> <p>○지도직 8급 승진</p>	<p>○ 미반영</p> <p>- 25개중 현재 22%수준 책정구는 중구 외 2개구이며 21%이내로 책정구는 종로구 등 15개구로 우리 구는 자치구 평균 수준임</p> <p>○ 미반영</p> <p>- 우리구는 기능직 6급 비율을 구청장협의회 권고안 비율 3%에서 4%로, 7급 비율을 6%에서 12%로 상향책정하여 전체 자치구 평 균 수준으로 종로구 등 1개 구가 이와 같음.</p> <p>○ 검토예정</p> <p>- 규칙 개정시 검토</p> <p>○ 검토예정</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74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7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

제5조(직별의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32%이내	27%이내	12%이상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기능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기준비율	4%이내	12%이내	50%이내	30%이내	4%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정직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
기준비율	0%	38%이내	38%이내	24%이상	0%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74	1,274			
정무직	1	1			
일반직계	981	981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0	29	2	11	18
6급이하	913	913			
별정직계	13	13			
기능직계	279	279			